

학 칙

광 신 대 학 교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따라 정통적 칼빈주의 신학의 보수와 세계복음화의 실천방법을 연구하고 교수하며, 이를 통해 신학과 신앙의 보수 및 발전을 이루고, 기독교신앙에 투철한 교역자와 애국적 지도자를 양성하여 세계를 복음화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바지하고자 설립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광신대학교라 칭한다. (이하 본교로 칭함)

제3조(소재지) 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에 둔다.

제4조(교육편제) 본교에는 인문사회계열, 사범계열, 예능계열로 나눈다.

제5조(학과(부) 및 정원) 본교에 설치하는 각 학과(부)의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계 열 별	학 과 별	입 학 정 원	비 고
		주 간	
인문사회 계 열	신 학 과	45	
	한국어교육학과	4	
	복지상담융합학부	34	
사 범 계 열	유아교육과	10	
예 능 계 열	음 악 학 부	29	
계	2학부 6과	122	

제6조(대학, 대학원) 본교에는 대학, 대학원을 둘 수 있다.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7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본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②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편입자의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3 장 학년 · 학기 ·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②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 이상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중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정기휴업일)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주일(일요일) 및 국정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하기 방학
4. 동기 방학

제10조(임시 휴업일) ① 입학고사, 졸업식 등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② 비상사태,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보충수업) 휴업일이라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충수업 또는 실습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 장 입 학

제12조(입학시기) 신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년초 30일 이내로 하며, 재입학 및

편입학의 시기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단, 외국인 유학생은 매 학기초에 입학 및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3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세례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단, 한국어교육학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유아교육과, 음악학부는 학습교인도 가능하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전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14조(편입학 자격) ①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제2학년을 수료하고 65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② 학사편입학은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3학년에 정원외로 편입학 할 수 있으며, 당해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 당해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4 이내로 한다. 또한 전문학사편입학은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 제 학년에 정원외로 편입학 할 수 있으며, 당해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3, 당해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재입학) ① 본교에서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입학서류) ① 본교에 입학을 지망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학원서는 본교와 계약에 의해 원서접수를 대행하는 업체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 할 수 있다.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2.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3. 삭제
4. 당회장 추천서

5. 삭제

6. 기타 필요한 서류는 모집시 모집요강을 통해 공고한다.

② 신입학 및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전항의 서류일부를 가감할 수 있으며 모집요강에 이를 명시한다.

③ 이미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입학사정) ① 입학고사의 과목·기일·방법 등은 총장이 임명하는 '입학위원회'가 주관하며 모집요강에 이를 공표한다.

② 입학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그 구성방법, 임무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입학의 허가는 총장이 행한다.

④ 기타 입학사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입학고사 방법) 신입생의 선발은 다음과 같은 과목을 병과하여 사정하되 총장이 따로 정하는 과목을 병합할 수 있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2. 면접고사

3. 대학별고사(필답고사 및 실기고사)

4. 삭제

5. 졸업 또는 수료학교의 학업성적(편입학의 경우)

6. 고등학교 내신성적

7. 입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항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으며 모집요강에 명시한다.

제19조(입학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내에 소정 납입금의 납부 등 기타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입학 후라도 제 1조 교육목적 및 본 대학의 교육이념에 위배되는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제21조(등록) ① 신입생 및 재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등록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 또는 제적처분할 수 있다.

제 5 장 휴학·복학·퇴학·제적 및 전과

제22조(휴학)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이내에 휴학사유서와 보증인 연서로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전항 사유의 소멸로 4주 이내에 등교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휴학의 취소를 허가받을 수 있다.

③ 병역복무로 인한 휴학은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전문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가망이 없거나 지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⑤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계속 보유한다.

⑥ 1회 휴학기간은 1년(2개학기)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1학기도 할 수 있다.

⑦ 휴학 횟수는 1회에 계속하여 1년(2개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만료 2개월 전 사유서를 제출, 총장의 허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기타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당해 학기초 4주 이내에 소정의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③ 기타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자퇴)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를 구비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성년인 경우 보증인 연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매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4주 이상을 무단 결석한 자

3. 성적불량 또는 신체 및 정신 허약이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학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타교에 학적을 둔 자

5. 무단 휴학자

6. 휴학기간 만료후 다음 등록 기간 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7.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26조(전과) 전과는 아래 각 항에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학과(부)간 전과(이하 “전과”라한다)는 재학중 1회에 한하여 매학기초 2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과의 허가는 해당학과(부) 정원의 20%이내에서 할 수 있다.

③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이전 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④ 삭제

⑤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류(본교비치)를 작성하여 현 소속학과(부)의 학과(부)장과 전과를 희망하는 학과의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교학처장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전학과(부)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⑧ 전과한 자는 기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해당학과(부)의 전공 필수과목을 이수 해야한다.

⑨ 기 취득한 학점중 당해 학과(부) 교과목과 유사하거나 공통되는 교과목은 그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제 6 장 교 과 와 이 수

제27조(교과구분) ① 본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및 기타과목으로 한다.

② 교양과목은 기초교양, 핵심교양, 일반교양 및 융복합교양과목으로 구분하고, 전공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③ 기타과목은 일반선택과목, 교직과목, 부전공과목 및 복수전공과목 등으로 구분한다.

제28조(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의 이수단위는 1학기간 15시간 이상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습, 실험, 실기, 및 체육의 이수 단위는 1학기간 30시간으로 한다.

제29조(교과이수 및 운영) ① 교양과목의 학과(부)(계열)별 최소 이수학점은 아래표와 같다.

구 분		기초교양	핵심교양	일반교양	융복합교양	계
계 열	학 과					
인문사회	신학과	10	30		40	
	복지상담융합학부	12	30		42	
	한국어교육학과	12	30		42	
예체능	음악학부	12	20		32	
사범	유아교육과	12	20		32	

② 교양과목은 신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있게 편성한다.

③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은 60학점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교과과정표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④ 선택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자가 적정규모 미만일 때에는 이를 개설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단, 수강절대 인원이 소규모인 학과(부), 학년의 경우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의 경우 등 특수한 형편이 고려되어야 할 과목은 교학처장의 결정으로 개설할 수 있다.)

제30조(수업시간표 및 수강신청) ① 수업시간표는 교과과정에 따라 학기 개강 전에 총장이 정하여 교내 학사게시판 또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일내에 소정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을 하지 못한다.

④ 일단 수강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그 교과목의 개강이 취소되지 않는 한 학교 당국의 허가 없이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1조(학점 인정 및 취소) ① 학교자체 내규에 따라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학점을 인정한다.

②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③ 총장이 인정한 특별시험으로 합격한 교과목은 학점과 성적을 인정하고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기타 특별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이수학점 범위) ① 학생은 매학기 16학점을 기준으로 본인의 형편에 따라 가감하여 수강신청하여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아래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1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매학기 22학점까지 수강신청하여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1. 국가공인 자격취득을 요하는 학과(부)로 자격취득을 위한 과목을 이수코자 하는 자.
2.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00이상인자
3.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3.00이상인자

4. 교직과정과 부전공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는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3.00이상인자.
- ③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④ 매 학기 계절학기 최대 이수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 단, 히브리어, 헝가어 수강자등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초과할 수 있다.
 - ⑤ 특별시험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취득학점 제한규정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33조(학년별 수료학점) ① 학점에 의한 학년별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

- 제 1학년 32학점
- 제 2학년 65학점
- 제 3학년 98학점
- 제 4학년 130학점

② 해당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학년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4조(편입학자의 학점) ①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학교의 교과목 이수내용 또는 소정의 수료 학점을 심사하여 기준학점을 인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제35조(재입학자의 학점)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재입학 이전의 학점을 참작하여 기준학점을 인정 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제36조(전과한 자의 학점) 전과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학과(부) 교과목의 공통되는 범위내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제37조(부전공) ① 제2학년까지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와 전공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총 장의 허가를 받아 부전공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 부전공과정의 이수자는 부전공학과(부)의 전공과목에서 12학점의 부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 여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예능계열은 부전공을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부)내의 부전공은 허용한다.

④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증서 또는 수료증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⑤ 부전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8조(복수전공) ① 제 2학년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와 전공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성적 평균평점이 3.00이상인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이수 연한은 제7조의 재학연한의 범위내로 한다.

②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학과(부)의 전공필수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③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 또는 수료증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④ 복수전공과정의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9조(유급) ① 중도수료 대상자 중 학업성취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유급을 시킬 수 있다.

② 유급된 자가 재유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취득할 경우는 제적처분 할 수 있다.

③ 유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시험과 성적 졸업

제40조(시험) ① 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나누되, 정기시험은 매학기 말 시험기간에 수 업한 범위내에서 행하고 임시시험은 필요에 따라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 할 수 없다.

제41조(성적비율) 학업성적반영비율은 시험, 과제물, 학생발표 및 수업참여도, 출석의 요소를 반영하여 각 교수·강사가 해당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비율을 정하고 이를 수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단, 출석의 반영비율은 최소 20% 이상 최대 50% 이내로 하며, 실습을 제외한 교과목의 성적산출은 출석, 시험, 과제물 중 출석을 포함하여 최소 2가지 요소 이상을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학점인정 및 낙제) 60점(D)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59점(F) 이하는 낙제로 한다.

제43조(성적 평가 등급) ① 학업성적은 제41조에 따라 평가하고 평점에 따른 등급은 다음과 같다.

등 급	평 점	실 점 수	비 고
A+	4. 5	95 - 100	
A	4. 0	90 - 94	
B+	3. 5	85 - 89	
B	3. 0	80 - 84	
C+	2. 5	75 - 79	
C	2. 0	70 - 74	
D+	1. 5	65 - 69	
D	1. 0	60 - 64	
F	0	60점 미만	
P	불 계	합 격	실천학점 등
NP	불 계	불합격	실천학점 등

② 정기시험 답안지, 과제평가자료 등 학업성적 산출자료는 3개년까지 교수가 개별적으로 보관하여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임교수를 제외한 교수·강사는 매학기 종강 후 동 성적산출자료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학교에서 일괄 보관하도록 한다. (단, 출석부는 전임교수를 포함한 모든 교수·강사 공히 매학기 종강 후 교학처에 제출한다.)

③ 졸업에 소요되는 평균평점은 전학년 1.5 이상이어야 한다. 단, 사범계열학과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44조(재수강 및 선택 이수) ① 낙제된 과목이 필수과목이면 재수강하여 반드시 학점을 취득해야 된다. 단, 선택과목이면 학적부에 F로 처리되나 타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제45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자는 해당교과목 교수의 허락으로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추가시험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시험 개시전에 반드시 사유를 (증빙서 첨부) 총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추가시험 성적은 B학점 이하로 평가한다. 단,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추가시험은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종료한다.
- ⑤ 추가시험에 소요되는 재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한다.

제46조(특별시험) ① 학생은 특별시험으로 12학점 범위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특별시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7조(학위수여) ① 삭제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 ⑤ 삭제
- ⑥ 삭제
- ⑦ 삭제
- ⑧ 삭제
- ⑨ 졸업은 전기졸업과 후기졸업으로 구분하며, 졸업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규정에 따른다.
- ⑩ 수여학위의 종별은 별지2호 서식과 같다.

제48조(실천학점) ① 교과목과 구분하여 매일 경건예배를 실시한다.

- ② 경건예배출석, 교회봉사 등을 종합하여 실천학점을 부과한다.
- ③ 매 학기 마다 실천학점을 이수치 아니하면 이수된 모든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④ 기타 세부사항은 실천학점 이수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제48조의 2(장애학생에 대한 특례) ① 특례를 받는 장애학생과 이들에 대한 특례 범위는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재학연한과 휴학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 ③ 제1항에 의한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자격인정에 필요한 영역 중 성격고사 영역, 정보처리 능력영역, 어학능력영역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 ④ 기타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규 율 과 상 별

제49조(학생준칙 일반) 학생은 별도로 정하는 학생준칙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신행을 기르며 교양을 높여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50조(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결석할 때에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질병결석이 10일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표창) ①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신행이 탁월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52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가한다.

1. 성행이 불량하여 학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많은 자
4. 음주, 흡연자, 남·여 교제가 문란한 자
5.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자.

6. 기타 학칙 또는 제규칙을 위반한 자

7. 이단사상에 심취하거나 이를 유포하는자.

-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으로 구분한다.
- ③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그 결정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 ④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3조(총장 직접 징계사항) 총장은 학칙 및 따로 정한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직접 징계할 수 있다. 단, 교수회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54조(재입학 및 편입학년)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내에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단, 총장의 허락이 있을 경우 이를 허락할 수 있다.

제55조(학사경고) ①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매학기 성적의 평균 평점이 1.50 미달된 자는 학사 경고를 행한다.

- ② 재학 중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적처분할 수 있다.

제 9 장 납 입 금

제56조(납입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및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실험실습 및 연구에 관한 비용과 기성회비 등 기타 비용은 따로 징수 한다.
- ③ 총장은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상 곤란한 자 또는 상이군경, 순국지사의 유자녀(순교자 자녀 포함)등 법령의 규정이나 본교의 따로 정한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수업료의 전액과 기타 등록금의 일부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 ④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총장이 정하여 매 학기 초에 이를 공시 한다.
- ⑤ 등록금은 결석, 정학, 퇴학 등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하며 일단 납입한 금액은 과오로 인정된 것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0 장 장학금 및 학비감면

제57조(장학금) ① 학생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장학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장학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교학처장과 그의 총장이 명하는 교직원으로 한다.
-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8조(학비감면) 법령에 규정되었거나 학비감면의 사유가 있는 학생에게 학비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 11 장 정원외의 학생

제59조(위탁학생)① 정부 각 부처의 장이 그 소속 직원의 교육을 위탁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이를 위탁학생으로 하여 정원에 관계없이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탁학생이 휴학중 그 소속 부처의 직을 사임하였을 경우는 제적한다.

③ 위탁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59조의2(계약에 의한 학과, 학부의 설치 운영등) ① 본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인력을 수요하기 위해 학과 및 학부와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등(이하 계약학과등"이라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학과, 학부 또는 유사한 학과, 학부를 활용 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 경비,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 운영기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0조(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국 수학생) ①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국수학생은 이수능력을 평가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정원의외로 신입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에게는 교과 이수의 정도에 따라 수료증 또는 증서를 수여한다.

③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국 수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61조(시간제등록생)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 12 장 공개 강좌

제62조(공개강좌) ① 본교의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이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시간, 수강자격 및 정원, 장소 기타 이에 관한 사항은 개강때마다 총장이 이를 정하여 발표한다.

③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13 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63조(부설기관) 본교에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1. 도서관

① 기존 도서관자문위원회는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②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 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1)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예산, 조직,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
 - 3)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 시간
 - 4) 시설 및 도서관자료
2. 학보사
 3. 생활관
 4. 삭제
 5. 보육교사교육원
 6. 각종 연구소
 7. 삭제
 8. 출판부
 9. 어린이집
 10. 평생교육원
 11. 생활한방교육원
 12. 외국인 근로자 성경아카데미(한국어과정)
 13. 사모상담전문가과정
 14. 여자신학원
 15. 언어교육원
 16. 한국어교육원
 17. 영양보호사교육원
 18.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19. 목회자사모신학원
 20. 정서코칭상담교육원
 21. 지역사회서비스사업단

제 14 장 학 생 활 동

제64조(학생회)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지도력과 자치능력 배양을 위하여 학생자치기구로 본교에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의 설치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조직과 운영 및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5조(학생회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학생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6조(지도교수) 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 지도교수는 매 학년 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지도해야 하며, 특히 학칙을 위반하는 학생은 특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도교수는 매학기 학생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학생상담센터와 협력하여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7조(금지행위) 학생은 성토, 시위, 농성, 수업거부 등으로 교육과 질서 유지에 배치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8조(사전 승인행위) 학생단체는 다음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에서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69조(간행물의 발간) 학생단체가 정기, 부정기의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또는 인쇄된 간행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하며 그의 동의와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 장 직 제

제70조(직제) ① 본교의 직제는 이사회 인준하에 별도로 이를 정한다.

② 본 대학교 교원의 재계약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규정에 준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인사규정에 준한다.

제 16 장 교 수 회

제71조(교수회) ① 본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외의 교직원은 총장이 명할 경우 연권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단, 교양학부 및 비정년 트랙교원은 제외한다.

제72조(소집 및 의장)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적교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교수회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3조(심의사항) 교수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제규정 제정, 폐지, 변경에 관한 발의
2. 입학, 진급, 졸업 및 퇴학, 휴학, 복학에 관한 사항
3. 학과(부)의 설치 및 폐지의 건의
4. 학생지도 장학, 훈육, 상벌에 관한 사항
5. 부설기관의 설치운영 및 폐지의 건의
6. 기타 총장이 자문하는 학사에 관한 사항

제 17 장 교무위원회

제74조(교무위원회) ① 본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무위원회에 간사를 두어 행정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이는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으로 한다.

④ 교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학과(부) 및 부설기관 등의 설치와 폐지
2.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3.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

- 5. 학생지도 및 후생에 관한 사항
- 6. 학과(부)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⑥ 교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18 장 삭제

제75조(설치와 운영)① 삭제

- ② 삭제
- ③ 삭제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 5. 삭제
- ④ 삭제

제 19 장 각종위원회

- 제76조(각종위원회) ① 본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장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20 장 학칙개정

제77조(학칙개정절차) 본 대학교의 학칙개정절차는 개정안의 조정된 내용을 공고한 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수회의 결의로 개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1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기독교아동학과 학생의 경과 조치) 유아교육과 신설로 인하여 폐지되는 기독교아동 학과는 2003학년도 입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7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3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1조(성적비율)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편(폐지)되는 학과 경과 조치)

1. 2018학년도 이전에 국제한국어교원학과로 입학한 재학생은 한국어교육학과로 학과명칭 변경된 것으로 보고 변경된 학칙에 따른다.
2. 2018학년도 이전 사회복지상담학과로 입학한 재학생은 복지상담융합학부에 속한 것으로 보며, 2018학년도 이전 음악학과, 실용음악학과로 입학한 재학생은 음악학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	호
증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이 대학 소정의 전 과정(○○ 전공)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광신대학교 총장(학위) ○ ○ ○ (직인)	
교육부 학위등록번호 광신대00 (학) -----	

별지 제 2호 서식

학 위 종 별 표

학위종별	계열	학과
신학사	인문계열	신학과
문학사	인문계열 사회계열	한국어교육학과 복지상담융합학부
교육학사	사범계열	유아교육과
음악학사	예능계열	음악학부